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전통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·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변경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경미한 구역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 신설).
- 전통시장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7조제1항 제5호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10조는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을 대통령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런데 현행법은 제2조제1호에서 전통시장을 정의하면서 전통시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,¹⁾

1)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통시장”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·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,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.

전통시장 인정이나 구역변경 등 그 내용의 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.

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은 일정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전통시장 인정 및 구역변경 일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경미한 구역변경만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,

개정안의 취지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구역변경에 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만큼 상대적으로 경미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

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후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하여는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.

개 정 안	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
제10조(시장의 <u>경미한 구역변경</u>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정한 시장의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·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	제10조(시장의 <u>인정 등</u>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가.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

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

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개 정 안	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
<u><신 설></u>	<u>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② 제1항에 따른 <u>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/u>	② 제1항에 따른 <u>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·군·구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.</u>

-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 수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